

[특집]

미사 예물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황 광 옥

[서울대교구 법원 변호인, 세종로성당 부주임 신부]

머리말

1. 미사 예물에 관한 기본 이해
 - 1.1. 미사 예물의 정의
 - 1.2. 미사 예물의 역사적 배경
 - 1.3. 미사 예물에 대한 신학적 이해
 - 1.4. 미사 예물 규정에 관한 법 제정
2. 1983년 교회법전의 미사 예물 규정
 - 2.1. 미사 예물의 합법성
 - 2.2. 미사 예물의 목적
 - 2.3. 미사 예물의 상행위 배제
 - 2.4. 미사 예물에 따른 미사 거행의 의무
 - 2.5. 같은 날 여러 번 미사 거행할 때의 미사 예물
 - 2.6. 미사 예물의 액수
 - 2.7. 미사 책무 이행
 - 2.8. 미사의 위탁
 - 2.9. 미사 책무 이행의 감독과 미사 대장
3. 한국 천주교회의 미사 예물 규정
 - 3.1.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미사 예물 규정
 - 3.2.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의 미사 예물 규정

결론

머리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체성사를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¹⁾이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교역이나 사도직 활동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성사들은 성찬례와 연결되어 있고 성찬례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1964.11.2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³2013, 제11항.

에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내포되어 있다. 곧 우리의 ‘파스카’이시며 살아 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신다.”²⁾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는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성찬례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고 이를 기념하며 현재화한다.³⁾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거행된다. 특별히 희생 제사로서 바치는 성찬례는 산 이와 죽은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한 보상과 하느님께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⁴⁾ 그래서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신자들은 사제에게 미사 거행을 청하면서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기도 지향을 청하였고, 사제는 신자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였다.

신자들은 성찬례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희생 제사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사제에게 미사 지향을 청하면서 봉헌 예물을 함께 바쳤다. 이 봉헌 예물을 ‘미사 예물’이라고 한다. 신자들은 미사 예물을 봉헌하며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었고, 특별히 교회 교역자들의 생계유지에 이바지하였다.

미사 예물은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사제에게 유익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자들은 미사의 은혜와 선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미사 예물을 봉헌하기도 하였고, 사제들은 지향에 따른 미사를 봉헌하면서 받는 보수의 개념으로 미사 예물을 여기기도 하였다. 물론 미사 예물은 미사의 은혜와 선익을 사고팔거나 미사 거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거래나 매매계약이 아니다. 미사 예물은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에게 기도를 청하면서 교회의 필요나 사제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Presbyterorum Ordinis*, 1965.10.2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³2013, 제5항.

3)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²2008, 제1366항.

4) 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414항.

위하여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봉헌 예물이다.⁵⁾

신자들이 개인적인 지향에 따라 미사를 바쳐 주도록 청하면서 미사 예물을 제공하는 관습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는 미사 예물의 남용이나 매매 등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 규범을 제정하여 왔다.⁶⁾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천이자 중심으로 매일 거행되는 미사에 신자들은 미사 예물을 봉헌하고 사제는 지향에 따른 미사를 거행하며 봉헌된 미사 예물을 자기 몫으로 하고 있기에 미사 예물은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가 제정한 미사 예물 규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사 예물에 관한 기본 이해

1.1. 미사 예물의 정의

‘미사 예물’(stips Missae)은 신자가 사제에게 특정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청하면서 교회와 사제에게 전달하는 현금 또는 예물이다.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는 미사를 거행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신자의 개인적인 지향을 기억하며 기도한다. 미사 예물은 미사 거행을 위하여 바치는 봉헌 예물 가운데 하나이며,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에게 기도와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제공하는 사례금이기도 하다.⁷⁾

1917년 교회법전은 제824-844조에서 미사 예물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며 제목을 ‘미사 희사 또는 급료’(De Missarum eleemosynis seu

5) 참조: 예정출, 「미사 예물」, 『신앙과 삶』, 17(2008), 부산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87쪽.

6)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3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1983.1.25), 주교회의의 교회법위원회 번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제1385조.

7) 참조: 주교회의의 전례위원회, 「미사 예물의 역사와 의미」, 『경향잡지』, 1481(1991/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38쪽; 정진석, “미사 예물”, 『한국가톨릭대사전』 제5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2953쪽.

stipendiis)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법조문에서 미사 예물을 지칭하는 단어로 라틴어 ‘eleemosyna’⁸⁾와 ‘stipendium’⁹⁾, ‘stips’¹⁰⁾를 사용하였다. ‘eleemosyna’는 ‘희사’ ‘기부’ ‘자선’ 등을 의미하고,¹¹⁾ ‘stipendium’은 ‘대가’ ‘보상’ ‘보속’ ‘급료’ 등을 의미한다.¹²⁾ 이 가운데 ‘stipendium’은 일한 대가로 받는 보상의 의미로 상업적인 매매나 대가성의 의미가 있으며 신자들로부터 미사 예물을 받으면서 갖게 되는 사제의 급여와 관련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3년 교회법전은 제945~958조에서 미사 예물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며 제목을 ‘미사 거행 예물’(De oblata ad Missae celebrationem stipe)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법조문에서 ‘stips oblata’ ‘stips Missae’ ‘stips’가 미사 예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는데, ‘공여(供與)’ ‘헌금’ ‘봉헌금’을 의미하는 ‘stips’라는 단어¹³⁾가 공통으로 쓰였다.

용어의 변경은 1972년 교회법 개정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위원회는 ‘stips’라는 용어의 역사적 기원이 하느님의 영광이나 선행을 위한 선물 또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증여에 있다고 설명하며, 성찬례와 관련해서 미사 예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stips’가 ‘stipendium’보다 그 본성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미사 예물을 뜻하는 단어로 ‘stips’를 사용하였다.¹⁴⁾ 이와 같은 용어의 변경은 미사 예물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 본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사 예물에 적용

8) 1917년 교회법전에서 ‘eleemosyna’는 제824조 1~2항, 제825조 1~4항, 제829~830조, 제833조, 제836조, 제840조 2항, 제843조 1~2항, 제844조 1항에서 사용된다.

9) 1917년 교회법전에서 ‘stipendium’은 제824조 1항, 제826조 1~3항, 제828조, 제839조에서 사용된다.

10) 1917년 교회법전에서 ‘stips’는 제827조, 제831조 1항, 3항, 제832조, 제840조 1항에서 사용된다.

11) 참조: 한동일·이순용 엮음, “eleemosyna”, 『카르페 라틴어 한국어 사전』, 문예림, 2019, 416쪽.

12) 참조: 가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연구소 엮음, “stipendium”, 『라틴-한글 사전』,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885쪽.

13) 참조: 한동일 외, “stips”, 앞의 책, 1265쪽.

14) Cf. A. Marzoa, “The Blessed Eucharist”, in *Code of Canon Law Annotated*, Montreal: Wilson & Lafleur Limitee, 1993, pp.601~602; *Communicationes* 4(1972), pp.57~58.

되는 기부가 전적으로 무상이며 어떤 계약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1917년 교회법 제826조는 미사 예물을 수교적 예물(stipendia manualia),¹⁶⁾ 준수교적 예물(stipendia ad instar manualium),¹⁷⁾ 기금 예물(stipendia fundata)¹⁸⁾로 구분하였지만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이러한 미사 예물에 관한 구분을 폐지하였다.¹⁹⁾

1.2. 미사 예물의 역사적 배경

시초부터 인간은 하느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러한 모습은 창세 4,3~5에서 카인이 땅의 소출을, 아벨이 양 떼 가운데 판매들과 그 굳기름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구약 성경은 축제일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기 위하여 성전에 올 때 하느님께 봉헌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사제에게 주었고, 사제는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제사를 지냈다. 하느님께 제물을 봉헌하는 관습은 신약 시대에서도 계속 이어졌다.²¹⁾

15) 참조: 예정출, 앞의 글, 189~190쪽.

16) 수교적 예물은 직접 손으로 바치는 예물이라는 뜻이다. 신자가 자기의 신심에서 바치는 미사 예물 또는 유증자가 그의 상속인에게 부과한 의무에서 바치는 미사 예물 등이다. 참조: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7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302쪽.

17) 준수교적 예물은 직접 손으로 바치는 것과 비슷한 예물이라는 뜻이다.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에 따라 바치는 미사 예물이지만 기금 설정 취지대로 지정된 장소나 의무자에 의하여 미사 봉헌이 이행될 수가 없어서 다른 사제에게 미사 봉헌을 부탁하면서 전달하는 미사 예물이다. 참조: 같은 책.

18) 기금 예물은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바치는 미사 예물이다. 이것을 영정 미사 예물이라고도 말한다. 참조: 같은 책.

19) 참조: 신동철, 「1983년 교회법전과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 나타난 미사 예물 규정에 관한 소고」, 『가톨릭사상』, 38(2008/후기),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5쪽.

20) 참조: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편찬,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탈출 23,15; 34,20; 신명 16,16; 집회 35,6.

미사 예물 제도가 언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는 근거 사료가 거의 없어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초기부터 거행한 미사 가운데 봉헌된 예물이 미사 예물의 원시적 형태였다는 사실이다. 2세기 중엽 순교자 유스티누스(Justinus, 100/10경~165)가 쓴 호교론을 보면,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하느님께 바쳐질 봉헌 예물로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고 그 밖의 다른 예물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이들을 비롯하여 고아나 과부에게 나누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²²⁾ 2~3세기의 봉헌 예물은 미사의 제물과 사제의 생활비로서의 의미를 지니었고, 신자 개인의 특별한 지향으로 예물이 봉헌된 것은 아니었다. 미사 예물에 신자 개인의 기도 지향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던 것은 4세기 이후의 일이다.²³⁾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4세기 이후에는 교회의 신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래서 미사 거행 중에 봉헌 행렬 예식이 생겨났고 신자들이 바치는 예물이 다양해졌다.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표시로 행렬을 지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사제나 부제에게 바쳤다. 지역의 교회 공동체는 이 예물의 상당 부분을 교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밖에 봉사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에도 사용하였다.²⁴⁾ 이러한 예물 봉헌은 세례 받은 신자들에게만 인정되는 명예이자 권리이며 의무였다. 예물 봉헌은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증표였기 때문이다.²⁵⁾ 서방 교회의 신자들은 미사 거행 전에 예물을 봉헌하는 동방 교회 전례의 영향을 받아 미사 거행 전에도 별도의 예물을 바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빈손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미사를 봉헌하기 전이나 미사 가운데 예물을 바치면 하느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신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

21) 참조: 예정출, 앞의 글, 188쪽.

22) 참조: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앞의 글, 138~139쪽.

23) 참조: 예정출, 앞의 글, 191~192쪽.

24) 참조: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앞의 글, 139쪽.

25) 참조: 정진석, 『미사예물』, 『경향잡지』, 1308(1977/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86쪽.

념은 한층 더 발전하여 예물을 혼자서 부담하면 미사의 은총이 더 클 것이라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²⁶⁾

8~10세기의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 사제의 공동 생활 제도가 퇴보하면서 교회는 사제의 생활비를 신자들로부터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사제가 미사를 거행하면서 특정한 지향을 기억해 줄 것을 청하는 신자로부터 예물을 받고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는 관습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8~9세기경 갈리아에서 시작하여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일부 신자가 미사 전에 사제에게 예물을 봉헌하며 개인 지향에 따른 미사 거행을 청하면 그 지향으로 미사를 거행하는 신심미사(Missa votiva)²⁷⁾나 개인 미사(Missa privata)²⁸⁾가 보급되었다.²⁹⁾

사제가 특정 지향을 기억해 달라는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면서 신자들로부터 예물을 받는 한 미사 한 지향의 관습은 10세기 이후에 확산하였고, 11~12세기에는 보편화되었다.³⁰⁾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성찬 예식에 온전히 참여하고, 봉헌한 예물을 교회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며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세로 들어서면서 미사 안에서 신자들의 역할은 축소되었다.³¹⁾ 중세부터 20세기 전례 개혁 때까지 전례는 대부분 성직자의 일이었다고 신자들은 침묵하는 관중이었다. 신자들은 전례 언어인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친교에 참여하는 일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자들은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미사에 자신의 지향이 기억되도록 제물로 미사 예물을 바치는 것이 전례에 긴밀하게 참여하는 방법이 되었다.³²⁾

26) 참조: 예정출, 앞의 글, 192쪽.

27) 신심미사는 신자들 없이 사제가 혼자서 개인 신심으로 드리는 미사이다. 참조: 신동철, 앞의 글, 3-4쪽.

28) 개인 미사는 사제가 개인 혹은 단체의 지향을 위하여 부탁한 미사 봉헌을 그 지향에 따라서 바치는 미사이다. 참조: 같은 글.

29) 참조: 예정출, 앞의 글, 192쪽.

30) 참조: 정진석, “미사 예물”, 2953-2954쪽.

31) Cf. M. Francis Mannion, “Stipends and Eucharistic Praxis”, *Worship* 57(1983/5), 203-204.

32) Cf. John P. Beal / James A. Coriden / Thomas J. Green(eds.), *New Commentary on the*

미사 예물 제도가 오늘날에도 시행되는 것은, 오랜 교회 전통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교회가 미사 예물이 주는 유익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교회 관할권자들은 미사 예물 제도의 관습을 오늘날에도 지속시킬 정당성에 관한 충분한 이유 또는 주요한 이유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교회의 관습에서 보고 있다. 미사 예물이 교회 전통에 기인한다는 점을 교황 바오로 6세(S. Paulus PP. VI, 재임 1963~1978)는 1974년 「자의 교서」(*Firma in traditione*)³³⁾에서 처음 언급하였다. 이 자의 교서는 교황이 제시하는 미사 예물에 관한 신학적, 인류학적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 예물이 교회 안에서 존속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1983년 교회법 제946조와 「자의 교서」(*Firma in traditione*)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인 동기 때문이다.³⁴⁾ 1983년 교회법전은 미사 예물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교회법전은 미사 예물에 관한 신학적 이유를 정의하지 않지만 미사 예물 제도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실천적 측면에서 사제들이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법조문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³⁵⁾

1.3. 미사 예물에 대한 신학적 이해

중세에 신자들로부터 예물을 받고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는 관습이 생겨나면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미사 예물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미사의 선익 즉 영신적 이익에 관한 이론을 주장하였다.³⁶⁾ 9세기 메스의 아말라리우스(*Amalarius of Metz*, 775~850년 경)는 미사의 선익을 3가지로 구분하여 보편 교회가 받는 선익, 구호품이나 예물을 제공한 이들이 받는 선익, 그리고 성직자가 받는

Code of Canon Law, Mahwah, NJ: Paulist Press, 2000, p.1129.

33) S. Paulus PP. VI, *Motu proprio* “*Firma in traditione*”(1974.6.13.), *Acta Apostolicae Sedis*(이하 ‘AAS’라고 표기한다) 66(1974), pp.308~311.

34) Cf. John M. Huels, “Stipends in the New Code of Canon Law”, *Worship* 57(1983/5), 220.

35) 참조: 예정출, 앞의 글, 194쪽.

36) 참조: 정진석, “미사 예물”, 2954쪽.

선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3세기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 1265/1266~1308)는 이 이론을 발전시켜 아말라리우스와 같이 미사의 선익을 3가지로 구분하여 성직자에게, 보편 교회에, 그리고 특별지향의 주체가 되는 이에게 미사의 선익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모든 신자가 미사에 참여하며 받는 선익,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가 미사를 거행하며 받는 선익, 그리고 지향대로 미사가 거행되기를 청하면서 미사 예물을 봉헌하는 이가 받는 선익이 있다는 이론을 정립하였다.³⁷⁾ 그러나 미사 예물과 미사의 영신적 이익 사이의 연관성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미사 예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신학적 관점이 등장하였다. 모리스(Maurice de la Taille, 1872~1933)는 미사 예물을 희생 제사를 위하여 물질 제물을 제공하는 역할 안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예물 제공자는 성찬례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칼 라너(Karl Rahner, 1904~1984)는 모리스의 접근 방식을 따르면서 미사 선익의 문제와 예물 제공자의 능동적인 역할에 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라너는 미사의 선익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구분을 거부하였다. 그 대신 미사 예물의 제공을 통해 예물 제공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찬례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³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발표된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Firma in traditione*)에서도 미사의 특별한 선익 이론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교회 공식 교도권 안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사 예물에 관한 정당성을 지지하는 두 가지 신학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미사 예물은 신자들이 미사 중에 바치는 예물이나 헌금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데,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를 영구히 기념하고 재현하는 성찬이자 제사이며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는 미사를 집전하며 완전한 제물인 그리

37) Cf. M. Francis Mannion, *op.cit.*, 205.

38) Cf. *Ibid.*, 208~209.

스도와 함께 그분의 지체인 신자들도 봉헌한다. 한편 신자들은 자신들을 봉헌하는 외적 표시로 미사 중에 공동으로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미사 전에 개별적인 지향과 함께 미사 예물을 봉헌한다. 그런 면에서 미사 예물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히 결합하고, 거기서 나오는 효과를 더욱 풍성히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징적 표지이다.

두 번째로 신자들이 미사 예물로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와 이웃에게 봉사하는데, 그들이 바치는 예물은 사제의 생활과 사목 활동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자선금으로 쓰인다. 물론 사제는 예물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모든 백성과 세상 구원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봉헌하지만, 하느님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품삷을 받고,³⁹⁾ 제단 봉사자로서 제단의 제물에서 먹고 살 권리가 있다.⁴⁰⁾ 따라서 신자들이 바치는 예물 가운데 일부를 자기 몫으로 가질 수 있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물 제공자가 원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힘있게 간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성찬과 예물의 참뜻을 안다면 미사 예물을 독점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성찬의 기본 정신은 초대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듯이⁴¹⁾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미사 예물은 세례를 받은 신자와 그리스도, 신자와 사제, 나아가서 사제와 이웃과의 긴밀한 일치와 나눔의 표지이다.⁴²⁾ 미사 예물에 관한 이와 같은 관점은 미사 예물이 교회의 실천적 삶의 모습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39) 참조: 루카 10,7.

40) 참조: 1코린 9,13.

41) 참조: 사도 2,42-47.

42) 참조: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앞의 글, 139-140쪽; Motu proprio “Firma in traditione”, AAS 66(1974), p.308.

1.4. 미사 예물 규정에 관한 법 제정

교회 초기에 미사 가운데 행해져 온 예물 봉헌으로 시작된 미사 예물 제도는 처음부터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오해를 일으켰다. 그래서 816년과 853년에 있었던 로마 시노드와 1562년 트리엔트 공의회의 제22차 회기에서는 미사 예물의 남용을 막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1625년 교황 우르바노 8세(Urbanus PP. VIII, 재임 1623~1644)는 미사 예물에 관한 지침을 처음으로 상세하게 제정하였다.⁴³⁾ 1697년 교황 인노첸시오 12세(Innocentius PP. XII, 재임 1691~1700)는 교황령 Nuper을, 1738년 교황 베네딕토 14세(Benedictus PP. XIV, 재임 1740~1758)는 교황령 Quod expensis를, 1794년 교황 비오 6세(Pius PP. VI, 재임 1775~1799)는 교황령 Auctorem fidei를, 1904년 교황 비오 10세(S. Pius PP. X, 재임 1903~1914)는 교령 Ut debita를 통하여 미사 예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⁴⁴⁾ 이후에 1917년 교회법전은 미사 예물과 관련한 그동안의 제반 규정을 정리하여 교회 공법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1983년 교회법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반영하여 1917년 교회법전에서 미사 예물에 관하여 규정한 제824~844조의 개정 과정을 거쳐 제945~958조의 14개 조항으로 공포하였다. 교회가 제정한 미사 예물에 관한 교령이나 지침, 법전의 규범들은 대부분 미사 예물의 기본 정신을 강조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⁴⁵⁾

1983년 교회법전은 미사 예물을 오랜 교회 전통의 관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전통적인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미사 예물이 미사에 대한 보답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상의 기부로 규정한다.⁴⁶⁾

43) 참조: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앞의 글, 139쪽.

44) 참조: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7권, 299쪽.

45) 참조: 예정출, 앞의 글, 197쪽.

46) Cf. John M. Huels, *op.cit.*, 216.

2. 1983년 교회법전의 미사 예물 규정

2.1. 미사 예물의 합법성

1983년 교회법전은 미사 예물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다른 남용을 피하고자 ‘미사 거행 예물’에 관한 규범을 제945~958조의 14개 조항으로 제정하였다. 1983년 교회법 제945조 1항⁴⁷⁾은 1917년 교회법 제824조 1항⁴⁸⁾을 법원으로 하며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미사 예물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회법 개정위원회는 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예물을 뜻하는 용어로 ‘stips’를 사용함으로써 예물의 본성을 적합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사를 공동 거행하는 사제도 미사 예물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추가하였다.⁴⁹⁾ 제945조 2항⁵⁰⁾은 1983년 교회법전에 새롭게 마련된 조항으로 사제들은 예물을 받지 않아도 신자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사제가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 줄 자유가 있다고 규정한다.⁵¹⁾ 따라서 사제는 여러 지향으로 미사를 거행할 수 있고 어떠한 지향도 제한하지 않는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별 지향을 ‘생미사’와 ‘연미사’로 구분하며, 이 두 가지 지향은 한 미사에서 동

47) 1983년 교회법 제945조 1항: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48) 교황 베네딕토 15세, 『1917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1917), Roma: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17, 제824조 1항: “어느 사제든지 미사를 거행할 때, 교회가 승인한 관습과 관례에 따라서 예물을 받는 것이 허락된다”.

49) Cf. Joaquin Calvo-Alvarez, “The Offering Made for the Celebration of Mass”,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III/1, Angel Marzosa / Jorge Miras / Rafael Rodriguez-Ocana(eds.), Illinois: Midwest Theological Forum, 2004, p.698; *Communicationes* 4(1972), p.57.

50) 1983년 교회법 제945조 2항: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

51)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01조.

시에 기억될 수도 있다.⁵²⁾ 사제의 기도 지향은 미사 안에서 전체 기도 지향에 특별히 예물 봉헌자의 지향을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사가 미사 예물을 봉헌한 사람만을 위한 미사일 수 없다. 미사 안에 나오는 기도는 여러 지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한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 사제가 미사 예물과 결부된 지향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제는 정의에 따라 예물 봉헌자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지향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미사 예물에 결부된 지향을 미사 중에 기억하면서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⁵³⁾

사제는 미사 예물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의무는 아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미사 예물의 관습이 아예 없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미사 예물의 관습이 소멸되고 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은 미사 예물의 시행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 예물이 관습에 따라 합법적으로 존속하는 지역을 위하여 제정된 규범이다.⁵⁴⁾

사제는 미사 예물을 봉헌하기 어려운 가난한 신자들에게도 개별 지향을 받아 그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1983년 교회법전은 성사 집전에 있어서 교역자는 관할권자가 정한 봉헌금 외에는 신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이 박탈되지 않도록 교역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⁵⁵⁾ 사제가 예물 제공자의 지향을 기억하며 미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미사는 어디까지나 모든 이를 위한 미사이다. 따라서 성찬 기도문 안에서 개별 지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제가 미사를 거행하며 개별 지향을 강조하다 보면, 미사 자체가 특정인을 위한 미사로 여겨질 수 있고, 미사에 참석한 신자에게는 남의 미사에 참여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 지향을 강조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돈을 제공하면 자신만을 위한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52) 참조: 정진석, “미사 예물”, 2955쪽.

53) 참조: 신동철, 앞의 글, 7쪽.

54) 참조: 같은 글.

55) 참조: 1983년 교회법 제848조.

한다.⁵⁶⁾

2.2. 미사 예물의 목적

제946조⁵⁷⁾는 미사 예물이 갖는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3년 교회법전에 처음 제정된 것으로 미사 예물이 근본적으로 교회의 교역자들과 교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제946조는 「자의 교서」(*Firma in traditione*)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Firma in traditione*는 “이러한 관행으로 신자들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봉헌하고 거기에서 보다 풍부한 열매를 얻으셨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게 연결된다. 이 관행은 단지 승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와 신자 사이에 일치의 표지이며 그리스도와 세례받은 사람 사이에 일치의 표지로서 여기는 교회에 의해 장려된다.”⁵⁸⁾고 언급하며 미사 예물을 받는 전통을 정당화하면서 신학적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⁵⁹⁾

교회법을 개정하면서 성찬례와 예물 사이에 ‘정의의 개념’과 관련이 없는 성직자의 생활 유지를 위한 다른 제도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회법 개정위원회는 미사 예물이 교회의 오랜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이것이 성직자의 생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제도가 아니며, 미사 예물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은 분명하고 투명한 규범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⁶⁰⁾ 신자들이 예물을 제공하며 성직자의 지원에 계속 이바지하지만, 그것이 생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제도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⁶¹⁾

56) 참조: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앞의 글, 142쪽.

57) 1983년 교회법 제946조: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

58) *Motu proprio* “*Firma in traditione*”, *AAS* 66(1974), p.308.

59) Cf.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II, Bologna: EDB, ³2011, p.172.

60) Cf. *Communicationes* 13(1981), pp.431-432.

61) Cf. Joaquin Calvo-Alvarez, *op.cit.*, p.701.

신자들이 봉헌하는 미사 예물에는 사제의 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사업과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한 자선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즉 성직자의 생활비 지원만이 미사 예물의 고유한 용도가 될 수 없기에 미사 예물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고유한 권리이자 몫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제가 성찬례와 예물의 참된 의미를 고려하여 미사 예물을 자신의 몫으로만 여기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사 예물이 전적으로 사제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입법자의 지향과는 맞지 않음을 주지하여야 한다.⁶²⁾

2.3. 미사 예물의 상행위 배제

제947조⁶³⁾는 미사 예물을 통한 영업⁶⁴⁾이나 상행위⁶⁵⁾를 금지하는 규범이다. 이 조항은 1917년 교회법 제827조⁶⁶⁾를 법원으로 하며 법조문의 변경 없이 1983년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다.⁶⁷⁾ 제947조는 트리엔트 공의회에 ‘미사 봉헌에서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에 관한 교령’과 ‘개혁 교령’⁶⁸⁾을 포함하여 수 세기를 거쳐 제정되었던 다수의 규정을 요약해서 명문화한 것이다.⁶⁹⁾ 교회법 개정 과정에서

62) 참조: 곽종식, 「미사 예물의 목적과 사제들의 권리」, 『가톨릭사상』, 51(2015/후기),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43~144쪽.

63) 1983년 교회법 제947조: “미사 예물은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나 상행위도 전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64) 영업의 법적 의미는 어떤 주체가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영업은 넓은 뜻을 가진 용어이다. 이익을 남길 마음으로 물건을 교환하는 것 일체를 뜻한다. 참조: 정진석, 『교회법전 주해』, 한영만 개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321쪽.

65) 상행위의 법적 의미는 어떤 주체가 어떤 종류의 재화든 이익을 남기기 위해 거래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상행위 곧 매매는 좁은 뜻을 가진 용어이다. 상품을 돈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참조: 같은 책.

66) 1917년 교회법 제827조: “미사 예물에 관하여 어떠한 상업이나 매매의 형식을 전적으로 피해야 한다”.

67) Cf. *Communicationes* 13(1981), p.433.

68) G. Alberigo, et al. ed.(주세페 알베리고 외 5인 엮음),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김영국·손희송·이경상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6, 736~741쪽.

미사 예물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영업의 위험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교회법 개정위원회는 미사 예물 제도가 개별 교회에 강요될 수 없고, 다만 이 제도에 상행위나 탐욕, 부정의 위험이 적지 않게 숨어 있기에 미사 예물 제도를 시행하는 교회를 위하여 명확한 법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⁷⁰⁾

교회는 미사 예물을 통한 영업이나 상행위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1983년 교회법전은 성직자들이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이나 상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⁷¹⁾ 그런데도 제947조를 통하여 미사 예물을 통한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나 상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미사 거행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947조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영업이나 상행위를 통하여 미사 예물을 받아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⁷²⁾ 이러한 행동을 한 자는 교정벌이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받는다.⁷³⁾

2.4. 미사 예물에 따른 미사 거행의 의무

제948조⁷⁴⁾는 지향에 따른 각각의 미사 집전에 관한 규범이다.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규범을 법제화한 이 조항은 1917년 교회법 제828조⁷⁵⁾를 법원으로 한다. 법조문의 개정에서 ‘지향’(intentio)이 특별히 강조되었는데,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는 지향에 따라 미사를 바쳐

69) Cf. John P. Beal, et al., *op.cit.*, p.1131.

70) Cf. *Communicationes* 15(1983), p.200.

71) 참조: 1983년 교회법 제286조.

72) Cf. Joaquin Calvo-Alvarez, *op.cit.*, pp.703~704.

73) 참조: 1983년 교회법 제1385조.

74) 1983년 교회법 제948조: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

75) 1917년 교회법 제828조: “거행되고 바쳐 주어야 할 미사의 횟수는 예물의 금액을 묻지 않고 제공되고 또 수령된 예물과 같은 숫자여야 한다”.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는 법이 명시하고 규정하는 ‘정의에 따른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예물을 받은 순간부터 발생한다.⁷⁶⁾ 예물 제공자의 지향에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포함될 수 있으며, 미사 예물의 액수가 교구나 관구에서 정한 것보다 적을 수도 있다.⁷⁷⁾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미사 예물에 포함된 지향대로 미사가 봉헌되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 신자들이 봉헌하는 미사 예물이 줄어들자 소위 ‘합동 미사’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⁷⁸⁾ 세계 각국의 주교들은 미사 예물에 관하여 ‘합동’ 지향을 충족시키는 거룩한 미사 거행의 근거에 관한 판단을 사도좌에 요청하였다. 이에 관하여 교황청 성직자성은 1991년 2월 2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S. Ioannes Paulus PP. II, 재임 1978~2005)의 인준을 받아 사제들이 미사 거행을 위하여 받는 예물에 관한 교령 「항구한 관습」(*Mos Iugiter*)을 발표하였다.⁷⁹⁾ 교령은 제 948조에 반하여,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을 받아 합동 지향 미사(*Missa intentionem collectivaram*)로 봉헌하는 것을 허가하면서 그 시행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1조 2항은 “개별 지향에 따른 미사 거행을 위한 예물을 구별하지 않고 모아서 봉헌자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를 하나로 혼합하여 이른바 ‘합동’ 지향에 따라 한 대의 미사만을 거행하고 이로써 그 책무를 다하였다고 여기는 사제”⁸⁰⁾는 제948조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령은 정의에 따른 의무를 강조하며 합동 지향 미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시한다. “만일 봉헌자들이 사전에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나로 혼합되어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 ‘합동’ 지향을 적용한 한 대의 미사로써 그 책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⁸¹⁾ 합동 지향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76) Cf. Joaquin Calvo-Alvarez, *op.cit.*, pp.706~707.

77) Cf. John P. Beal, et al., *op.cit.*, p.1132.

78) Cf. Joaquin Calvo-Alvarez, *op.cit.*, p.707.

79)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들이 미사 거행을 위하여 받는 예물에 관한 교령 「항구한 관습」(*Mos Iugiter*, 1991.2.22.)」,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43(20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35~139쪽.

80) 교령 「항구한 관습」, 제1조 2항.

신자들의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일주일에 두 번을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이러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⁸²⁾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합동 지향 미사로 봉헌된 미사 예물에 관해서는 “교구 규정으로 미사 집전자가 교구 규정에 따라 한 대의 예물만 가지도록 규제”⁸³⁾할 수 있고, “교구 예물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교회법 제951조 1항과 같이 직권자에게 보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법으로 규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⁸⁴⁾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령은 ‘합동 지향 미사’라고 하는 예외적인 방식을 허용하면서 “교회법 규범의 예외가 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확산되어 미사 거행을 위한 봉헌의 의미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될 남용의 여지가 생겨나고, 신자들 가운데서 각각의 개별 지향에 따른 개별 미사의 거행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관습을 퇴색 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의 영혼과 교회 전체의 구원에 유익한 경건한 관습을 소멸시켜 버리므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는 교구의 사목자들은 이를 주의 깊게 숙고하여야 한다.”⁸⁵⁾고 규정하며 합동 지향 미사의 시행에 있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제949조⁸⁶⁾는 수령한 미사 예물을 분실한 경우에 관한 규범으로 미사 예물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미사 거행 ‘의무’를 강조한다. 이 조항은 1917년 교회법 제829조⁸⁷⁾를 법원으로 하고 있다. 교회법을 개정하면서 미사 예물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확고히 세운다면 1917년 교회법 제829조의 규범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다.⁸⁸⁾ 이후 약간의 문법적 수정을

81) 교령 「항구한 관습」, 제2조 1항.

82) 교령 「항구한 관습」, 제2조 2항.

83) 교령 「항구한 관습」, 제3조 1항.

84) 교령 「항구한 관습」, 제3조 2항.

85) 교령 「항구한 관습」, 제2조 3항.

86) 1983년 교회법 제949조: “미사를 거행하면서 예물을 제공한 이들의 지향대로 바쳐 줄 의무를 진 자는 비록 자기 탓이 없이 수령한 예물을 분실하더라도 동일한 의무가 있다”.

87) 1917년 교회법 제829조: “이미 수령한 미사 예물이 미사 거행 의무를 지는 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기인하지 않고 분실된 경우라도 그 거행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거쳐 1983년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다.⁸⁹⁾

이미 받은 예물을 분실하였을 때 사제의 잘못이 없더라도 예물을 제공한 이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물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미사를 바쳐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자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바쳐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예물을 받은 때이기 때문이다.⁹⁰⁾ 미사 지향을 청하며 미사 예물을 봉헌한 신자와 그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할 것을 약속하며 예물을 받은 사제 사이에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예물을 받은 사제는 그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야 할 중대한 양심적 책임이 있다. 미사의 예물과 책무는 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⁹¹⁾ 미사 예물을 받았다면 미사 봉헌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⁹²⁾ 예물 봉헌자의 지향에 따른 미사 거행의 의무는 오직 미사를 봉헌하였을 때 소멸한다.⁹³⁾ 만약 미사 봉헌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라면 사도좌에 청하여 이 의무를 줄이거나 면제받아야 한다.⁹⁴⁾

제950조⁹⁵⁾는 미사의 대수를 명시하지 않은 예물의 수령에 관한 규범이다. 이 조문은 미사 거행을 위하여 받은 예물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예물 제공자가 미사 예물을 제공하며 거행할 미사의 대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조문이다. 이 법 조항은 1917년 교회법 제830조⁹⁶⁾를 법원으로 한다. 법조문을 개정하면서

88) Cf. *Communicationes* 13(1981), p.434.

89) Cf. Joaquin Calvo-Alvarez, *op.cit.*, p.709.

90) Cf. Luigi Chiappetta, *op.cit.*, p.173.

91) 참조: 1983년 교회법 제199조 5호.

92) Cf. Joaquin Calvo-Alvarez, *op.cit.*, pp.709-710.

93) Cf. John P. Beal, et al., *op.cit.*, p.1132.

94) 참조: Elias Frank(엘리아스 프랑크), 『입문성사(세례·건진·성체), 고해성사 그리고 병자성사』, 김효석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9, 167쪽.

95) 1983년 교회법 제950조: “미사를 바쳐 주도록 큰 금액을 제공하면서 거행할 미사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예물 제공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규정된 예물을 유의하여 그 대수가 계산되어야 한다. 다만 그의 지향이 합법적으로 달리 추정되어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917년 교회법 제830조: “어떤 자가 미사 봉헌을 위해 일정 금액의 예물을 제공하고도 미사 대수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미사 대수는 그 사람의 거주지의 예물 규

내용상 변경되지는 않았고 약간의 문법적 수정이 있었다.⁹⁷⁾

큰 액수의 미사 예물일지라도 예물 제공자의 지향과 미사 대수가 명시되었다면 사제는 개인적으로 미사를 거행하거나, 가능하지 않다면 미사 거행의 의무를 다른 사제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큰 액수의 미사 예물을 봉헌한 예물 제공자가 원하는 미사 대수를 알 수 없다면 예물 제공자가 거주하는 곳의 규정에 유의하며 제1584조⁹⁸⁾의 ‘법률상 추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추정은 예물 제공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⁹⁹⁾ 이때 예물 제공자의 법률의 무지가 추정될 수 없으므로¹⁰⁰⁾ 예물 제공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사 예물의 액수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미사 대수를 계산한다. 미사 대수를 계산할 때는 예물이 봉헌된 지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물 제공자의 주소지나 준주소지¹⁰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¹⁰²⁾

성당이나 교회 묘지에 있는 봉헌함에 미사 예물이 봉헌된 경우에는 제948조에 따라 소액일지라도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가 봉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950조의 규범에 따라 미사 대수가 명시되지 않은 큰 액수의 미사 예물이 봉헌함에 봉헌된 경우 정해진 미사 예물 규정에 따라 미사 대수를 계산하여 봉헌된 예물만큼의 미사가 봉헌되어야 한다.

2.5. 같은 날 여러 번 미사 거행할 때의 미사 예물

제951조¹⁰³⁾는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할 때의 미사 예물 규

정에 따라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봉헌자의 의사가 이것과 다른 것이 정당하게 추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7) Cf. *Communicationes* 13(1981), pp.434-435.

98) 1983년 교회법 제1584조: “추정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개연적인 추측이다. 이 가운데 법률 자체로 정하여진 것은 법률상 추정이고, 재판관에 의하여 추측되는 것은 인위적 추정이다”.

99) Cf. Luigi Chiappetta, *op.cit.*, p.174.

100) 참조: 1983년 교회법 제15조 2항.

101) 참조: 1983년 교회법 제102조.

102) Cf. Joaquín Calvo-Alvarez, *op.cit.*, pp.711~712.

정이다. 제951조 1항의 본질은 합법적으로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할 수 있는 사제는 그가 받은 예물들 가운데 하나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1917년 교회법 제824조 2항¹⁰⁴⁾을 법원으로 한다.

사제가 하루에 두 번 미사를 거행하는 것을 라틴어로 ‘binatio’, 하루에 세 번 미사를 거행하는 것을 ‘trinatio’라고 한다.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성 목요일,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과 같은 때 외에는 하루에 두 번 이상 미사를 거행할 수 없다.¹⁰⁵⁾ 그러나 사제가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하루에 두 번,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미사를 거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¹⁰⁶⁾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할 수 있는 사제는 제공된 예물의 지향에 따라 각각 미사를 거행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미사 예물의 금액은 교회에서 정해지거나 교구의 관습으로 정해지는데 그 금액이 규정액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¹⁰⁷⁾ 만일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한 사제가 다양한 액수의 미사 예물을 받았다면 사제는 그 가운데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예물 하나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예물은 규범에 따라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¹⁰⁸⁾

103) 1983년 교회법 제951조 “1항: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미사마다 각각 제공된 예물의 지향대로 바쳐 줄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예수 성탄 대축일 외에는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 다만 외적 명에 따른 보수는 인정된다.

2항: 같은 날 다른 미사를 공동 거행하는 사제는 어떤 명의로도 이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다”.

104) 1917년 교회법 제824조 2항: “그러나 하루에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경우, 한 대의 미사를 정의로운 의무 이행을 위해서 봉헌할 때, 사제는 성탄 날을 제외하고 다른 미사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다”.

105) 참조: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7권, 211~212쪽.

106)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05조.

107)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2조 1항.

하루에 한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는 제951조 1항의 규정은 예외를 가진다. 법에 따라 주님 성탄 대축일에 거행하는 미사에서 사제는 각각의 미사마다 하나의 예물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교회법은 오랜 풍습에 따라 주님 성탄 대축일에 세 미사(밤 미사, 새벽 미사, 낮 미사)를 봉헌해 왔다.¹⁰⁹⁾ 1917년 교회법전은, 사제가 성탄에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고¹¹⁰⁾ 각각의 미사 예물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1917년 교회법전의 규범이 1983년 교회법전에도 적용되었다.

제951조 1항은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에게 외적 명의를 따른 보수를 인정한다. 사제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외적 명의에 따른 보수가 미사 예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적 보수는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에게 부수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일이 수반할 때 제공된다. 예를 들어 미사 거행을 위해 외부에서 오는 사제는 외적 보수로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¹¹¹⁾

제951조 2항은 1917년 교회법전을 개정하면서 추가된 조항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자의 교서」(*Firma in traditione*)에서 미사 예물에 관한 특별 권한을 제정하였다. *Firma in traditione*는 1972년 경신성에서 제정한 것¹¹²⁾과 같이 사제는 공동 거행하는 다른 미사에서 미사 예물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³⁾ 이 자의 교서의 규정은 현 교회법이 반포되기 전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법 개정위원회는 이 규정을 1983년 교회법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¹¹⁴⁾ 제951조 2항은 사제가 단지 미사 예물을 받기 위한 목적

108) Cf. Joaquín Calvo-Alvarez, *op.cit.*, p.715.

109) 참조: 김인영, “성탄 시기”,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7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4845쪽.

110) 참조: 1917년 교회법 제806조 1항: “사제는 사도좌의 은전 또는 교구 직권자가 준 권한에 의하지 않는 한 같은 날에 여러 번 미사 거행을 할 수 없다. 단, 주의 성탄 날과 모든 죽은 신자의 기념일에 세 번의 미사를 거행할 수 있다”.

111) Cf. Joaquín Calvo-Alvarez, *op.cit.*, p.722.

112) Cf. Sacra Congregatio pro Cultu Divino, Declaratio de concelebratione “In celebratione” (1972.8.7), *AAS* 64(1972), pp.561~563.

113) Cf. Motu proprio “Firma in traditione”, *AAS* 66(1974), p.308.

114) 참조: 신동철, 앞의 글, 12~13쪽.

으로 미사를 공동 거행하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래서 하루에 한 미사만을 공동 거행한 사제는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지만,¹¹⁵⁾ 하루에 미사를 거행하고 다른 미사를 공동 거행한 사제는 어떤 명의로도 공동 거행한 미사에서 예물을 받을 수 없다.¹¹⁶⁾

2.6. 미사 예물의 액수

제952조¹¹⁷⁾는 미사를 거행하면서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제공할 예물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 법 조항은 각 지역에서 미사 예물을 제공하려는 신자들에게 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액수를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952조는 1917년 교회법전 제831~832조¹¹⁸⁾를 법원으로 한다.

제952조 1항은 미사 예물의 액수를 정하는 권한을 “관구 공의회나 관구의 주교들의 회합”으로 규정하였다. 교회 관구 내에서 법규범에 따른 권위를 갖는 관구 공의회¹¹⁹⁾에서 정해진 미사 예물의 액

115)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45조 1항.

116) Cf. John P. Beal, et al., *op.cit.*, p.1133.

117) 1983년 교회법 제952조 “1항: 미사를 거행하면서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제공할 예물의 금액을 관구 전지역에 대하여 교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구 공의회나 관구의 주교들의 회합의 소임이고, 사제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미사를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은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

2항: 이러한 교령이 없는 곳에서는 그 교구에서 시행되는 관습을 지켜야 한다.

3항: 어느 수도회의 회원들이라도 모두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교령이나 그 지역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

118) 1917년 교회법 제831조 “1항: 수교적 미사 예물의 금액을 교구 내에서 정하는 것은 교구 직권자의 권한이다. 이 결정은 될 수 있는 한 교구 회의에서 정하여야 한다. 또 사제가 규정 이상의 예물을 강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2항: 직권자의 교령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

3항: 수도자도 수교적 예물에 관해서는 비록 면속자 일지라도 교구 직권자의 결정 또는 교구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 1917년 교회법 제832조: “사제는 교구 직권자가 금지하지 않는 한 미사 거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제공한 규정 이상의 예물이나 규정 이하의 예물을 수령할 수 있다.”.

119) 참조: 1983년 교회법 제432조 1항.

수는 사도좌로부터 인준을 받은 뒤 교령으로 공포된다.¹²⁰⁾ 관구 주교들의 회합을 통해서도 미사 예물의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도좌의 추인이 필요하지 않다. 교령으로 미사 예물의 액수가 정해지면 이에 어긋나는 관습은 폐지된다.¹²¹⁾ 미사 예물이 성직자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도 있기에 관구의 주교들은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미사 예물의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¹²²⁾

미사 예물의 액수가 정해지면 신자들은 개인적인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봉헌할 때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사제는 미사의 대수가 명시되지 않는 큰 금액의 미사 예물을 받았을 때¹²³⁾ 규정액에 따라 미사 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사제는 관구에서 정한 미사 예물의 액수를 신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규정액보다 많은 금액을 신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952조 1항은 미사를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은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952조 2항은 교회 관구에서 미사 예물의 액수를 교령으로 제정하지 않았을 때 각 교구에서는 시행되는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¹²⁴⁾ 그리고 교회법 밖의 관습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관할 입법권자의 특별 승인이 있어야 한다.¹²⁵⁾ 미사 예물의 액수에 관한 관습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비록 교구에서 시행되는 관습일지라도 교구장 주교가 아닌 관구 공의회나 관구 주교들의 회합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 예물의 액수를 정할 권한이 관구 공의회나 관구 주교들의 회합에 있기 때문이다.¹²⁶⁾ 미사 예물의 액수를 교령으로 공포한다면

120) 참조: 1983년 교회법 제446조.

121) 참조: 1983년 교회법 제28조.

122) Cf. Joaquín Calvo-Alvarez, *op.cit.*, p.726.

123)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0조.

124) 참조: 1983년 교회법 제23조.

125) 참조: 1983년 교회법 제26조.

126)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2조 1항.

1983년 교회법 제28조에 따라 관습은 교령에 의해 폐지된다.¹²⁷⁾

제952조 3항은 제952조 1항과 2항에 언급된 교령이나 관습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 ‘어느 수도회의 회원들’을 규정한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수도자와 면속자를 구분¹²⁸⁾하였고 교회법 개정 초안에서는 수도자 대신에 1983년 교회법전 제2권 제3편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용어인 ‘봉헌 생활회’의 회원과 면속자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면속자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수도회의 회원들도 미사 예물의 액수에 관하여 제952조 1항과 2항에 언급된 교령과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교황에 의하여 교구 직권자들의 통치에서 면속된 봉헌 생활회¹²⁹⁾라 할지라도 그 회원들은 이 조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¹³⁰⁾

2.7. 미사 책무 이행

제953조와 제954조는 사제가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예물을 받을 수 있는 한계와 미사 책무의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953조¹³¹⁾는 미사 예물을 제공한 신자들의 의사를 보증하기 위한 조항이다. 또한, 사제가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예물을 받았을 때 미사 이행의 의무를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제953조는 1917년 교회법 제835조¹³²⁾를 법원으로 한다. 교회법 개정 초안에서는 1917년 교회법 제835조의 의미를 온전히 보전하면서 표현의 수정만 있었고, 이후 문법적인 수정을 거쳐 1983년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다.¹³³⁾

127) Cf. Joaquin Calvo-Alvarez, *op.cit.*, p.727.

128) 참조: 1917년 교회법 제831조 3항.

129) 참조: 1983년 교회법 제591조.

130) Cf. Joaquin Calvo-Alvarez, *op.cit.*, p.728.

131) 1983년 교회법 제953조: “아무도 자기가 그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예물들을 일 년 안에 이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을 수 없다”.

132) 1917년 교회법 제835조: “아무도 자기가 거행하는 미사의 부담을 일 년 안에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

사제는 일 년 안에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할 수 있는 만큼의 예물만을 받아야 하며 일 년의 기간은 예물을 받은 순간부터 계산된다.¹³⁴⁾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는 받은 미사들과 이를 이행한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¹³⁵⁾ 그리고 미사 예물을 받고 일 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미사 책무가 있다면 소속 직권자가 정한 양식에 따라 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¹³⁶⁾

제953조가 미사 예물에 따라 바쳐 주어야 할 미사 거행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면, 제954조¹³⁷⁾는 미사 예물에 따라 요청된 미사가 거행되어야 할 장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신자들의 지향을 존중하기 위해 사제는 미사 예물을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미사 거행의 의무를 미루지 말고 일 년 안에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사 거행에 있어서 장소에 관한 부분도 고려하여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미사 거행을 요청받았다면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물 제공자가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미사 예물을 받은 곳에서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¹³⁸⁾ 다른 곳에서 미사가 거행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면 미사 거행을 위탁하려는 이는 다른 사제에게 되도록 빨리 미사 집행을 위탁하며 받았던 예물 전액을 보내 주어야 한다.¹³⁹⁾ 그리고 받은 미사와 타인에게 위탁한 미사 대수 및 그 예물 액수를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¹⁴⁰⁾ 성당이나 경당에서 일 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미사가 생긴다면 미사의 책무를 소속 직권자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¹⁴¹⁾ 특별히 성지나 다른 경건한 장소에

133) Cf. *Communicationes* 13(1981), p.436.

134)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5조 2항.

135)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5조 4항.

136)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6조.

137) 1983년 교회법 제954조: “어느 특정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미사 거행을 요청받았다면, 다른 곳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다만 예물 제공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8) Cf. Joaquin Calvo-Alvarez, *op.cit.*, p.730.

139)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5조 1항.

140)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5조 3항.

141)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6조.

서는 통상적으로 미사 거행을 위한 예물이 많으므로, 담임 사제는 보편법의 규범을 준수하며 교령 「항구한 관습」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양심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¹⁴²⁾

2.8. 미사의 위탁

제955조는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거행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부분에 관한 조항이다.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는 일 년 안에 미사 거행의 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¹⁴³⁾ 예물 제공자가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장소에서 거행될 수 있도록¹⁴⁴⁾ 미사 거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955조 1항¹⁴⁵⁾은 미사 거행을 위탁하려는 이가 지켜야 할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미사 거행을 위탁하려는 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미사 거행을 위탁하여야 하고 그가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17년 교회법 제837~840조를 법원으로 한다.

제955조 2항¹⁴⁶⁾은 위탁받은 미사를 거행하여야 할 기간의 시작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17년 교회법 제837조를 법원으로 한다.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의 거행을 위탁받은 사제는 미사 거행을 수락하고 이에 포함된 예물을 받았을 때 미사 거행의 의무를 진다.¹⁴⁷⁾ 미사 거행을 위탁받은 사제는 미사 거행의 의무가 발생한

142) 참조: 교령 「항구한 관습」, 제4조.

143)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3조.

144)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4조.

145) 1983년 교회법 제955조 1항: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들의 거행을 타인들에게 위탁하려는 이는 흠잡힐 데 없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제들에게 되도록 빨리 이 미사 거행을 위탁하되, 받았던 예물 전액을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교구의 규정액을 초과한 금액을 제공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는 미사 의무의 인수 및 예물 수령의 증서를 받을 때까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146) 1983년 교회법 제955조 2항: “미사들을 거행하여야 할 기한은 미사를 거행할 사제가 받은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7)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5조 1항.

날부터 일 년 안에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¹⁴⁸⁾

제955조 3항¹⁴⁹⁾은 거행하여야 할 미사를 타인에게 위탁한 이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 이 조항은 1917년 교회법 제844조 1항¹⁵⁰⁾을 법원으로 한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교구 직권자나 수도회 장상이 위탁한 미사에 관하여 대장에 기재하여야 했다. 그러나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교회 권위와 관계없이 거행하여야 할 미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이들은 받은 미사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미사 및 그 예물을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955조 4항¹⁵¹⁾은 미사 거행을 요청받은 모든 사제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이 조항은 1917년 교회법 제844조 2항¹⁵²⁾을 법원으로 한다.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를 가끔 받는 사제이든 자주 받는 사제이든 모든 사제는 미사 거행을 요청받은 미사와 이를 이행한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미사 거행과 관련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은 미사 거행을 요청하며 미사 예물을 제공한 신실한 신자들의 의사에 대하여 사제가 미사 거행의 의무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¹⁵³⁾ 그래서 어느 사제든지 거행하도록 받은 미사와 이를 이행한 것을 미사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956조¹⁵⁴⁾는 일 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미사의 책무에 관한 규

148)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3조.

149) 1983년 교회법 제955조 3항: “거행하여야 할 미사들을 타인들에게 위탁한 이들은 받은 미사들과 타인들에게 위탁한 미사들 (대수) 및 그 예물(금액)들도 지체 없이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50) 1917년 교회법 제844조 1항: “자기의 소속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사 거행을 위탁하는 교구 직권자들과 수도회 장상들은 예물과 함께 받은 미사들을 곧 순서대로 대장에 기재하고 되도록 빨리 거행되도록 힘써야 한다”.

151) 1983년 교회법 제955조 4항: “어느 사제든지 거행하도록 받은 미사들과 이를 이행한 것은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52) 1917년 교회법 제844조 2항: “더욱이 모든 사제는 교구에 속하든 수도회에 속하든 받은 미사와 이행한 미사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53) Cf. Joaquín Calvo-Alvarez, *op.cit.*, p.740.

154) 1983년 교회법 제956조: “신심 사업의 관리자이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를 진 모든 이는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모두 일 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미사들의 책무를 소속 직권자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에

정이다. 미사 거행의 책무를 가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일 년 안에 거행하지 못한 미사의 책무를 소속 직권자에게 명확하게 보고하고 미사의 책무와 미사 예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1917년 교회법 제841조 1항¹⁵⁵⁾을 법원으로 한다. 1983년 교회법 제956조는 1917년 교회법 제841조 1항과 유사하지만, 시효의 계산에서 차이가 있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이행하지 못한 미사 책무를 봉헌자의 미사 요청을 수락한 날로부터 일 년이 경과한 해의 연말에 소속 직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¹⁵⁶⁾ 그러나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미사 거행을 수락한 날부터 계산하여¹⁵⁷⁾ 일 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미사 책무를 소속 직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행하지 못한 미사 책무를 소속 직권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매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계하는 때는 소속 직권자의 재량에 맡겨진다.¹⁵⁸⁾

제956조에 따라 소속 직권자는 일 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미사 책무를 그가 정한 양식에 따라 넘겨받는다.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 뿐만 아니라 법률상 직권자¹⁵⁹⁾도 이행하지 못한 미사 책무를 넘겨받을 수 있다. 직권자는 이행하지 못한 미사 책무를 인계받는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절차가 제정될 때까지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¹⁶⁰⁾

2.9. 미사 책무 이행의 감독과 미사 대장

제957조¹⁶¹⁾는 미사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누

게 인계하여야 한다”.

155) 1917년 교회법 제841조 1항: “신심 사업의 관리자들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사 책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 모든 이는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연말마다 이행하지 못한 미사 책무를 소속 직권자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56) 참조: 1917년 교회법 제844조 1~2항.

157)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5조 2항.

158) Cf. Joaquín Calvo-Alvarez, *op.cit.*, pp.741~742.

159) 참조: 1983년 교회법 제134조 1항.

160) Cf. Joaquín Calvo-Alvarez, *op.cit.*, pp.742~743.

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한다. 앞선 제956조가 이행하지 못한 미사 책무를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하였다면 제957조는 모든 미사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한다. 제957조는 1917년 교회법 제842조¹⁶²⁾를 법원으로 한다.

교구 직권자는 재속 성직자의 성당에서 그리고 수도회 혹은 사도 생활단의 장상들은 그들의 성당에서 미사의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미사 거행의 의무가 준수되지 않는다면 미사 예물을 봉헌한 신자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가 거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합동 지향 미사에 관하여 교구장 주교는 교구 사제와 수도회 사제 모두에게 해당하는 미사 예물의 관리 규범을 명백하게 전하여 주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¹⁶³⁾

1917년 교회법전은 수도회에 속하는 성당에서 미사 책무의 이행을 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수도회의 장상들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교회법 개정 과정에서는 1917년 교회법전의 의미를 온전히 가져오면서 용어의 일치를 위해 ‘봉헌 생활회의 성당들’(in ecclesiis institutorum vitae consecratae)에서 미사 책무의 이행을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그들의 ‘원장들’(Moderatores)에게 속한다고 변경하였다.¹⁶⁴⁾ 그러나 최종적으로 공포된 1983년 교회법 제957조에서는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성당들’(in ecclesiis institutorum religiosorum aut societatum vitae apostolicae)에서 미사 책무의 이행을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그들의 ‘장상들’(Superiores)에게 속한다고 규정한다. 봉헌 생활회 가운데 재속회의 성직자 회원은 부제품을 받으면서 개별 교회에 입적되어¹⁶⁵⁾

161) 1983년 교회법 제957조: “미사들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는 재속 성직자의 성당들에서는 교구 직권자에게 속하고,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성당들에서는 그들의 장상들에게 속한다”.

162) 1917년 교회법 제842조: “미사들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할 권리와 의무는 교구에 속하는 교회들에서는 교구 직권자에게 속하고, 수도회에 속하는 교회들에서는 그들의 장상들에게 속한다”.

163) 참조: 교령 「향구한 관습」, 제6조.

164) Cf. *Communicationes* 13(1981), p.438.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된다.¹⁶⁶⁾ 그래서 재속회 사제의 미사 거행에 관하여 감독할 의무와 권리는 재속회 회장이 아닌 교구 직권자가 갖는다.¹⁶⁷⁾

제958조¹⁶⁸⁾는 미사 대장에 관한 규정으로 제958조 1항은 특별한 장소에서의 미사 대장에 관련된 조항이고 제958조 2항은 미사 대장의 감사에 관한 조항이다. 제958조 1항은 1917년 교회법 제843조 1항¹⁶⁹⁾을 법원으로 한다. 어느 사제이든지 거행하도록 받은 미사들과 이를 이행한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고,¹⁷⁰⁾ 거행하여야 할 미사들을 타인들에게 위탁한 이는 위탁한 미사 및 그 예물을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¹⁷¹⁾ 그 가운데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미사 예물을 늘 받는 성당 담임이나 그 밖의 신심 장소의 책임자는 자신이 맡고 있는 장소에 특별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58조 2항은 1항의 특별한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직권자에게 있음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17년 교회법 제843조 2항¹⁷²⁾을 법원으로 한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적어도’(saltem) 1년에 한 번 대장을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교회법 개정 초안과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적어도’라는 표현을 없애고 매년 대장을 감사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기간을 명확하게 하였다.¹⁷³⁾

165) 참조: 1983년 교회법 제266조 3항.

166) 참조: 1983년 교회법 제715조 1항.

167) Cf. Joaquín Calvo-Alvarez, *op.cit.*, p.745.

168) 1983년 교회법 제958조 “1항: 본당 사목구 주임 및 미사 예물을 늘 받는 성당이나 그 밖의 신심 장소의 책임자는 특별한 대장을 비치하고, 여기에 거행할 미사들의 대수, 지향, 제공된 예물 및 거행 완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항: 직권자는 매년 품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 이 (미사)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다.”

169) 1917년 교회법 843조 1항: “미사 예물을 늘 받는 교구 성당이나 수도회 성당의 책임자와 다른 신심 장소의 책임자는 특별한 대장을 비치하고, 여기에 수행한 미사의 대수, 지향, 예물 금액, 거행 완료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70)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5조 4항.

171) 참조: 1983년 교회법 제955조 3항.

172) 1917년 교회법 제843조 2항: “직권자는 적어도 매년 한 번 친히 또는 다른 이들을 시켜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다”.

173) Cf. Joaquín Calvo-Alvarez, *op.cit.*, pp.747~748.

미사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는 이는 미사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제957조와 같이 교구 성당들에 관하여서는 교구 직권자이고,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 소속 성당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의 장상이다.¹⁷⁴⁾

3. 한국 천주교회의 미사 예물 규정

한국 천주교회는 초창기부터 교회 안에서 사목하는 사제들이 효과적으로 사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례와 성사, 사목과 규율 등 교회 생활 전반에 관한 지도서나 지침서를 제정하였다.¹⁷⁵⁾ 1858년 처음으로 한국 교회 지도서인 『베르뇌 주교의 사목 서한』¹⁷⁶⁾이 공포되었고, 1887년에 『한국 교회 관례집』¹⁷⁷⁾이 공포되었다. 이후

174) 참조: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7권, 315쪽.

175) 참조: 최석우, “한국 교회 지도서”, 『한국가톨릭대사전』 제12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9431쪽.

176) 제4대 조선 대목구장인 베르뇌(S. F. Berneux, 張敬一, 1814~1866) 주교는 1857년 조선 대목구 제1차 시노드에서 의결된 규정들을 기초로 『베르뇌 주교의 사목 서한』(Lettre pastorale de Mgr Berneux)을 공포하였다. 베르뇌 주교는 시노드에서 결정한 사항 외에는 ‘쓰촨(四川) 시노드 교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베르뇌 주교의 사목 서한』은 미사 예물 규정과 관련하여 미사 대장의 작성을 언급하고 있고 ‘쓰촨 시노드 교령’은 미사 예물을 통한 상행위 금지, 미사 예물 액수, 예물에 따른 미사 거행의 책무에 관련된 규정들, 고해성사 때 죄에 대한 보속으로 미사 예물의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서한은 1887년 공포된 『한국 교회 관례집』(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ée)의 부록(Appendice)에 소개되어 있다. 참조: 장동하, 『한국 근대사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006, 339~343쪽; 한윤식·박신영 옮김, 『조선교회 관례집』, 토비트, 2013, 102~103쪽; 112~113쪽; 장신희 옮김, 『쓰촨 대목구 시노드』,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72~78쪽.

177) 제7대 조선 대목구장인 블랑(G. Blanc, 白圭三, 1844~1890) 주교는 1884년 개척된 조선 대목구 제3차 시노드 이후 1887년에 『한국 교회 관례집』(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ée)을 공포하였다. 『한국 교회 관례집』은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규정을 시대에 맞게 보완·심화하는 방향으로 지도서를 마련하였고 ‘쓰촨 시노드 교령’을 여전히 따라야 할 규정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 교회 관례집』은 미사 예물 규정과 관련하여 미사 예물 액수와 미사 대수가 정해지지 않은 큰 액수의 미사 예물을 받았을 때의 미사 거행, 미사 예물을 통한 상행위 배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참조: 장동하, 앞의 책, 349~357쪽; 한윤식, 『한국 첫 지역 공의회(1931) 이전에

1911년 조선 대목구가 서울 대목구와 대구 대목구로 분할된 후, 1912년에는 『대구 대목구 지도서』¹⁷⁸⁾가 공포되었고, 1922년에는 『서울 대목구 지도서』¹⁷⁹⁾가 공포되었다. 그리고 1932년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¹⁸⁰⁾가 공포된 후, 1958년에는 1932년에 공포된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의 일부를 수정한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의 새로운 개정판¹⁸¹⁾이 공포되었다. 1983년 교회법전이 반포된 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95년에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를 공포하였

거행된 시노드에 관한 연구」, 『신앙과 삶』, 31(2015), 부산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41~142쪽; 한윤식 외, 앞의 책, 39-40쪽.

178) 대구 대목구의 초대 대목구장인 드망즈(F. Demange, 安世華, 1875~1938) 주교는 당시까지 준행되고 있던 규정과 관습, 사도좌에서 공포한 규정들을 토대로 1912년에 『대구 대목구 지도서』를 공포하였다. 『대구 대목구 지도서』는 제82~86조에 미사 예물과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참조: 한윤식, 「1912년 대구대목구 시노드에 관한 연구」, 『신앙과 삶』, 36(2017), 부산가톨릭대학교 출판부, 92~93쪽;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편찬, 『대구 대목구 지도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2006, 45-48쪽.

179) 『서울 대목구 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는 서울 대목구장이었던 뮈텔(G. Mutel, 閔德孝, 1854~1933) 주교에 의해 1922년에 공포되었다. 『서울 대목구 지도서』는 1917년 교회법전과 기존의 지도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서울 대목구 지도서』는 제178~186조에 미사 예물과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참조: 한윤식, 「뮈텔 주교의 《서울 대목구 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1923) 연구」, 『교회사연구』, 37(2011), 한국교회사연구소, 45~47쪽; 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Hong Kong: Imprimeri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Étrangères de Paris, 1923, pp.81~84.

180)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는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이 되는 해인 1931년 개최된 한국 공의회 이후 1932년에 공포되었다.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는 이전에 공포된 지도서와 한국 공의회의 74개조 교령, 1917년 교회법전과 교황청에서 발표한 교령들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는 제260~267조에 미사 예물과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참조: 한윤식,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1932)에 관한 연구」, 『부산교회사보』, 103(2019), 부산교회사연구소, 24~27쪽; 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Hong Kong: Imprimerie de Nazareth, 1932, pp.116~119(이하 ‘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1932)’라고 표기한다.).

181) 1958년 공포된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는 제257~264조에 미사 예물과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참조: 한윤식,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1932)에 관한 연구」, 84쪽; 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iussu et auctoritate RR. Ordinatum denuo editum et a Sancta Sede approbatum, 1958, pp.127~131(이하 ‘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1958)’라고 표기한다.).

고, 2003년에는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을 발표하였다. 각각의 지도서는 그 당시에 사목하는 사제들이 효과적으로 사목활동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였고, 여기에는 미사 예물에 관한 규정들도 마련되었다.

한국 교회의 각 교구는 1983년 교회법전의 규범을 비롯한 보편 교회의 규정이나 지침들 그리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교구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구의 상황에 맞게 규정을 제정하였다. 오늘날 교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사 예물 규정은 1983년 교회법전과 사도좌의 지침,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1.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미사 예물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83년 교회법전과 1984년 개최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의 내용을 토대로 1932년 공포된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¹⁸²⁾ 이후 1992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사목 지침서의 내용을 확정하여 사도좌의 인준을 요청하였고,¹⁸³⁾ 1995년 사도좌는 주교회의가 제출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를 인준하면서 수정하여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주교회의는 1995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검토한 뒤, 1995년 예수 부활 대축일(4월 16일)에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Directorium Pastorale Coreae)를 공포하였다.¹⁸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제84~86조에서 미사 예물과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84조¹⁸⁵⁾는 미사 지향에 관한 규정이다.

182) 참조: 정진석,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14~15쪽.

183) 참조: 주교회의, 「1992년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69(1992/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5쪽.

184) 참조: 주교회의, 「1995년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회보』, 87(1995/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5쪽.

18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1.23. 사도좌 승인), 『한국

제84조 1항은 1983년 교회법 제901조에 따라¹⁸⁶⁾ 사제는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미사 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84조 2항은 1983년 교회법 제945조 1~2항의 규범을 통합하여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지만, 예물이 적거나 없더라도 지향대로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5조¹⁸⁷⁾는 여러 지향에 관한 규정이다. 제85조 1항은 1983년 교회법 제948조와 성직자성의 교령 「향구한 관습」 제1조 1항, 제2조 1항, 제3조 1~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제는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집전하여야 하고, 봉헌자들의 동의 아래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는 경우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85조 2항은 1983년 교회법 제951조에 따라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예물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6조¹⁸⁸⁾는 미사 예물 규정액에 관한 규정으로 한국 교회에서

지역 교회법전 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제84조: “1항: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세례 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미사 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2항: 사제는 미사에 특정 지향을 두도록 제공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는 예물이 적거나 또는 예물이 없더라도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교회법 제945조; 제952조 참조)”.

186) 사제는 산 이거나 죽은 이거나 신자거나 미신자거나 의인이거나 죄인이거나 미사를 드려 줄 수 있다. 참조: 정진석, 『교회법전 주해』, 829쪽.

187)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5조 “1항: 미사 예물이 적을지라도 각각 그 지향대로 따로따로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48조; 성직자성, 1991년 2월 22일, 미사 예물에 관한 교령 참조). 그러나 한국의 실정에 따라 봉헌자들의 동의 아래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는 경우 사제는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

2항: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도 그날의 모든 예물 중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예물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교회법 제951조 참조)”.

188)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6조: “한국 교회는 사제 생활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 사제가 받는 미사 예물 총액 가운데 교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것은 교구에 헌납한다(교회법 제952조 참조)”.

시행되고 있는 ‘미사 예물 공유화 제도’의 바탕이 되는 규정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본당 사목구의 규모와 상황에 따른 미사 예물 총액의 편차로 도시 본당 사목구와 농촌 본당 사목구에서 사목하는 사제들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하자 1977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미사 예물 공금화’¹⁸⁹⁾를 결정하였다.¹⁹⁰⁾ 이는 신자들이 사제들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봉헌한 미사 예물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사제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제들이 형제적 사랑으로 결속되어 사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⁹¹⁾ 이 결정은 1995년 공포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도 수록되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6조는 1983년 교회법 제952조에 따라 사제는 신자들이 미사를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이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지만, 사제 생활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하여 받은 미사 예물 총액 가운데 교구가 정한 일정액 이상의 것은 교구에 헌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사 예물 공유화를 시작한 시기는 교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구에서는 지향에 따른 미사 거행을 위해 받은 미사 예물을 수합하여 일정액을 사제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사 예물 공유화를 시행하고 있다.¹⁹²⁾

3.2.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의 미사 예물 규정

교황청 성직자성 훈령 「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La Presente Istruzione, 2002.8.4.)는 각 교구 주교와 주교회의가 이 훈

189) ‘미사 예물 공유화’가 처음에 시행될 때는 ‘미사 예물 공금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0) 제5안 미사 예물 공금화에 관한 건. 1. 사제 생활비는 각 교구별로 평준화하고, 미사 예물은 공금화한다. 2. 교구별 실시 시기는 다음 회계연도로 한다. 아울러 미사 예물은 사제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해석을 내리고, 호봉제는 평준화 안에 포함시켜 교구별로 정한다. 참조: 사무처, 「주교회의 추계정기총회」, 『경향잡지』, 1316(1977/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2쪽.

191) 참조: 곽종식, 앞의 글, 147~148쪽.

192) 참조: 같은 글, 149쪽.

령의 내용을 교회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규범을 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문헌의 내용 가운데 한국 교회의 사목 실정에 맞추어 본당 사목구와 특수 사목 전반에 도움이 될 대목들을 가리어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였다.¹⁹³⁾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은 제40~43항에서 미사 예물과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40항¹⁹⁴⁾은 미사 예물의 액수와 무관하게 수령된 미사 예물마다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봉헌자들의 사전 동의 아래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거나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사 예물에 관해서는 교구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3년 교회법 제948조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5조 1~2항에 따라 마련되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5조 1~2항은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었거나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를 거행하였을 때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에서는 이에 관하여 교구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1항¹⁹⁵⁾은 미사 예물이 없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3년 교회법 제945조 2항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4조 2항의 내용을 반복하며, 사제는 가난한 신자들이 미사 예물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미사 지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193)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2003.12.29), 『한국 지역 교회법전 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393쪽.

194)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 제40항: “미사 예물의 액수와 무관하게 미사 예물 하나에 미사 한 대씩 따로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봉헌자들의 사전 동의 아래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거나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를 집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사 예물에 관해서는 교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95)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 제41항: “사제는 예물 없이도 가난한 사람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42항¹⁹⁶⁾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6조의 규정과 같이 미사 예물 공유화를 위한 조항으로 각 사제가 받은 미사 예물 가운데 교구가 정한 일정액 이상의 예물은 교구에 보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3항¹⁹⁷⁾은 미사 대장에 관한 규정으로 봉헌된 미사 예물과 미사 거행 일자, 지향, 미사 거행의 책무 이행, 미사 거행의 위탁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본당 사목구에는 미사 지향을 기록하는 개별 대장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3년 교회법 제955조 3항과 제958조 1항 그리고 『교구 사제 사목 지침』¹⁹⁸⁾에 따라 마련된 규정으로 미사 거행의 책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미사 예물에 따른 미사를 거행한 사제는 그 내용을 미사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당 사목구 주임은 미사 지향을 기록하는 대장을 본당 사목구에 비치하여 거행된 미사가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

196)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 제42항: “한국 교회에서는 사제 생활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 사제가 받는 미사 예물 총액 가운데 교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미사 예물은 교구에 보낸다”.

197)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 제43항: “봉헌된 미사 예물, 거행 일자, 지향, 의무 이행, 다른 집전자에게 위탁한 미사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에는 반드시 미사 지향을 기록하는 개별 대장을 비치한다”.

198) 참조: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산하 교회의 교구 사제 사목 지침』(1989.1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²2016, 95쪽.

결론

사제는 거룩한 성찬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며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현재화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성찬례를 거행한다.¹⁹⁹⁾ 사제는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며 신자들의 개인적인 지향을 기억하고 기도한다. 신자들은 주님의 희생 제사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사제에게 기도 지향과 함께 미사 예물을 바친다. 미사 예물은 교회의 친교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와 그리스도의 일치, 신자들과 이들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의 일치를 드러내는 징표이며, 교회의 요구와 교회의 직무자들을 지원하는 가장 탁월한 형태이다. 오랜 전통 가운데 교회에 존속해 온 미사 예물은 지금도 교회의 선익에 이바지하며 사제와 교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회는 법규범을 통해 미사 예물 제도를 오류와 남용에서 보호하여 지속적으로 교회의 선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왔다. 그러기에 미사 예물 제도가 지닌 선의와 제도의 유익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사 예물을 봉헌하는 신자는 미사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들과의 더욱 긴밀한 일치와 나눔을 위한 무상의 기부이자 선물임을 기억하며 미사 예물을 봉헌하여야 한다. 미사 예물은 교회 활동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자 기부로 미사 예물을 뜻하는 용어가 ‘대가’나 ‘보상’을 뜻하는 ‘stipendium’에서 ‘예물’, ‘헌금’을 뜻하는 ‘stips’로 바뀐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사 예물을 봉헌하면서 교회 전체를 위하여 봉헌되는 미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영적인 이익보다 인간적인 만족을 앞세우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사 지향을 청하면서 미사 중에 이름이 불리기를 기대하는데, 그보다는 하느님의 자비와 교회의 기도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199) 참조: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2013.2.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³2018, 제67항.

것이 바람직하다.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미사 지향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규정들을 면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²⁰⁰⁾ 사제는 신자들에게 돈에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별히 가난한 신자들이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미사 지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사제는 미사 예물의 의미를 분명히 새기며 ‘한 미사 한 지향’의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여 각각의 지향에 따른 미사 거행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나 본당 사목구를 위한 선한 의도에서라도 미사 예물을 임의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교구의 규정에 따라 미사 예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자들이 제공하는 미사 예물은 교회의 선익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사제 개인의 생활이나 사목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교회나 본당 사목구, 신학교, 자선 단체나 어려운 이웃 등을 돕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제는 미사 대장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미사 예물에 따른 미사 거행의 책무를 이행하였음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관리자이자 감독자인 주교는 1983년 교회법전의 법규범에 따라 미사 예물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교구의 미사 예물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교구가 미사 예물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1983년 교회법전의 법규범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편법이나 미사 예물과 관련된 교회의 규정들이 개별 교회 안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하거나 기존의 규정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미사 예물을 봉헌하는 신자들이 많아서 한 미사에 여러 지향을 두고 미사를 거행하는 경우가 많다. 교구에서는 여러 지향을 두고 미사를 거행하더라도 신자들의 지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 미사 한 지향’의 원칙에 따라 미사가 거행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교령 「항구한 관습」에 따

200) 참조: 교구 사제 사목 지침, 제27항.

라 합동 지향 미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규정에 따라 합동 지향 미사를 거행하고 있다. 그러나 합동 지향 미사를 거행하면서 전제로 두어야 할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합동 지향 미사를 거행하는 교구가 적지 않다. 교구장 주교는 합동 지향 미사가 정의에 따라 거행될 수 있도록 교령이 제시하고 있는 전제나 조건들을 교구의 미사 예물 규정에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교회의 차원에서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 교령에 따른 합동 지향 미사의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교회에서 준용할 수 있는 미사 예물의 액수를 정하여 미사 예물을 봉헌하는 신자들에게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사제들에게는 정의에 따라 미사 거행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제들이 미사 거행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하며 미사 거행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제에게는 그에 따른 정당한 제재를 가하여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제와 신자들에게 미사 예물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²⁰¹⁾ 미사 예물의 의미와 원칙을 분명하게 설명하여 미사 예물 제도가 교회의 선익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알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미사 예물을 봉헌하거나 미사가 거행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찬례 거행의 전례 규범은 성찬례의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찬례를 거행하는 사제는 성찬례 거행의 전례 규범을 매우 충실히 준수하고 공동체들은 규범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²⁰²⁾ 특별히 미사 예물이 성찬례의 거행에 더욱 긴밀히 결합하고, 교회의 친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사 예물을 받고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나 미사 예물을 봉헌하는 신자 모두 미사 예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교회의 오랜 전통 안에서 실행되어온 미사 예물 제도가 정의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 참조: 교령 「향구한 관습」, 제6-7조.

202)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2003.4.17.),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25(20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52항.

[참고 문헌]

1. 성경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2. 교회법전

교황 베네딕토 15세, 『1917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1917), Roma: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1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3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1983.1.25),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번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3. 교회문헌

Pontificia commissio codici iuris canonici recongnoscendo, “De oblata ad Missae celebrationem stipe”, *Communicationes* 13(1981), pp.430-439.

_____, “Opera Consultorum in parandis Canonum Schematibus”, *Communicationes* 4(1972), pp.39-72.

_____, “Relatio complectens synthesim animadversionum ab Em.mis atque Exc.mis Patribus Commissionis ad novissimum Schema Codicis Iuris Canonici exhibitarum, cum responsionibus a secretaria et Consultoribus datis”, *Communications* 15(1983), pp.170-253.

S. Paulus PP. VI, Motu proprio “Firma in traditione”(1974.6.13), *AAS* 66(1974), pp.308-311.

Sacra Congregatio pro Cultu Divino, Declaratio de concelebratione “In celebratione”(1972.8.7), *AAS* 64(1972), pp.561-563.

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Hong Kong: Imprimerie de Nazareth, 1932.

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iussu et auctoritate RR. Ordinationum denuo editum et a Sancta Sede approbatum, 1958.

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Hong Kong: Imprimeri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Étrangères de Paris, 192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2003.4.17.),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25(20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66쪽.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들이 미사 거행을 위하여 받는 예물에 관한 교령 「항구한 관습」(*Mos iugiter*, 1991.2.22)」,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43 (20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35~139쪽.

_____,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2013.2.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³2018.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산하 교회의 교구 사제 사목 지침』(1989.1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²20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1964.11.2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³2013.

_____,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Presbyterorum Ordinis*, 1965.10.2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³201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²2008.

_____,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2003.12.29., 주교회의 승인), 『한국 지역 교회법전 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²2013, 391~414쪽.

_____,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1.23. 사도좌 승인), 『한국 지역 교회법전 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²2013, 11~247쪽.

4. 단행본

Alberigo, G., et al. ed.(주세페 알베리고 외 5인 엮음),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김영국·손희송·이경상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6.

Beal, John P. / Coriden, James A. / Green, Thomas J.(eds.),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Mahwah, NJ: Paulist Press, 2000.

Chiappetta, Luigi,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II, Bologna: EDB, ³2011.

Frank, Elias(엘리아스 프랑크), 『입문성사(세례·견진·성체), 고해성사 그리고 병자성사』, 김효석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²2019.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편찬, 『대구 대목구 지도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2006.

장동하, 『한국 근대사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006.

장신희 옮김, 『쓰촨 대목구 시노드』,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7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_____, 『교회법전 주해』, 한영만 개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_____,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한윤식·박신영 옮김, 『조선교회 관례집』, 토비트, 2013.

5. 정기간행물

Huels, John M., “Stipends in the New Code of Canon Law”, *Worship* 57(1983/5), 215~224.

Mannion, Francis M., “Stipends and Eucharistic Praxis”, *Worship* 57(1983/5), 194~214.

곽종식, 「미사 예물의 목적과 사제들의 권리」, 『가톨릭사상』, 51(2015/후기),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35~159쪽.

사무처, 「주교회의 추계정기총회」, 『경향잡지』, 1316(1977/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2쪽.

신동철, 「1983년 교회법전과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 나타난 미사 예물 규정에 관한 소고」, 『가톨릭사상』, 38(2008/후기),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20쪽.

예정출, 「미사 예물」, 『신앙과 삶』, 17(2008), 부산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86~215쪽.

정진석, 「미사예물」, 『경향잡지』, 1308(1977/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86~89쪽.

주교회의, 「1992년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69(1992/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3~8쪽.

_____, 「1995년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회보』, 87(1995/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4~11쪽.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미사 예물의 역사와 의미」, 『경향잡지』, 1481(1991/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38~142쪽.

한윤식,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1932)에 관한 연구』, 『부산교회사보』, 103(2019), 부산교회사연구소, 24~95쪽.

_____, 「1912년 대구대목구 시노드에 관한 연구」, 『신앙과 삶』, 36(2017), 부산가톨릭대학교 출판부, 87~120쪽.

_____, 「뫼텔 주교의 《서울 대목구 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1923) 연구」, 『교회사연구』, 37(2011), 한국교회사연구소, 41~94쪽.

_____, 「한국 첫 지역 공의회(1931) 이전에 거행된 시노드에 관한 연구」, 『신앙과 삶』, 31(2015), 부산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11~168쪽.

6. 사전 및 편집단행본

Calvo-Alvarez, Joaquin, “The Offering Made for the Celebration of Mass”,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III/1, Marzoa, Angel / Miras, Jorge / Rodriguez-Ocana, Rafael(eds.), Illinois: Midwest Theological Forum, 2004, pp.694~748.

Marzoa, Angel, “The Blessed Eucharist”, in *Code of Canon Law Annotated*, Montreal: Wilson & Lafleur Limitee, 1993, pp.578~608.

가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연구소 엮음, 『라틴-한글 사전』,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김인영, “성탄 시기”, 『한국가톨릭대사전』 제7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4844-4849쪽.

정진석, “미사 예물”, 『한국가톨릭대사전』 제5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2953~2955쪽.

최석우, “한국 교회 지도서”, 『한국가톨릭대사전』 제12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9431~9443쪽.

한동일·이순용 엮음, 『카르페 라틴어 한국어 사전』, 문예림, 2019.

국문초록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서 바치는 성찬례는 산 이와 죽은 이들의 죄에 대한 보상과 하느님께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 바쳐졌다.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신자들은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에게 특별한 기도 지향을 청하였고, 사제는 신자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였다. 신자들은 사제에게 미사 지향을 청하면서 예물을 제공하였는데 이 예물을 ‘미사 예물’(stips Missae)이라고 한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전례 안에서 지속되었고, 이와 함께 신자들로부터 예물을 받은 사제가 신자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는 관습도 생겨났다. 사제는 미사를 거행하면서 예물을 제공한 신자들의 지향을 기억하며 기도하였고, 신자들이 제공한 미사 예물은 교회의 사업과 사제의 생활을 지원하였다. 미사 예물 제도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미사 예물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교회는 미사 예물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범을 마련하였고, 1983년 교회법전은 제945~958조에서 미사 예물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였다. 1983년 교회법전은 미사 예물 제도가 정의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가 미사 거행의 책무를 온전하게 이행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83년 교회법전과 이후 공포된 사도좌의 교령과 훈령을 바탕으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와 『사제 사목 생활에 관한 규범』에 미사 예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교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교구의 사정에 맞추어 교구 미사 예물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미사 예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사 예물에 관한 규정들은 미사 예물 제도가 지닌 선의와 유익함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정의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미사 예물을 받고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미사 예물을 제공하는 신자 모두가 미사 예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사 예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제어: 미사, 미사 예물,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